

-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 : 우형찬 의원 외 10명

나. 의안번호 : 제2069호

다. 제출일자 : 2017. 8. 22.

라. 회부일자 : 2017. 8. 22.

2. 제안사유

- 현행 ‘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’의 차고지비 항목 중 자가 및 기타 임대차고지 사용료 요율을 규정함으로써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3호)

나. 자가차고지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차고 면적을 고려하여 공시지가의 25/1000를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함(안 제3조의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17. 8. 23 ~ 8. 30

○ 제출의견 :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) : 수용

- 현재 표준운송원가 중 자가차고지비 항목은 해당 차고지 공시지가의 25/1000을 적용하고 있으므로, 개정 조례안에 따라 우 리시의 재정지원(표준운송원 지급액)이 증가되지 않음
- 다만, 현재 적용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 전체 13개 항목 중 특 정 항목에 대해서만 산정방식을 구체화하여 정하고 있다는 점 과,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절차를 정한 기존 규정(제3조제2항)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‘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 지침’의 차고지비 항목 중 자가 및 기타 임대차고지 사용료 요율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2004년 7월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행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한 표준운송원가 13개 항목의¹⁾ ‘차고지비’ 중에서

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차고지를 ‘자가차고지 등’으로 정의하는 한편 현재 표준운송원가 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자가차고지 소유자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

- 이와 관련하여 2004년부터 2016년까지 ‘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’ 중 ‘차고지비’는 변동이 비교적 잦은 항목으로써 현재 지급되고 있는 차고지비의 사용요율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항목 변동을 안정화시키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1) 가동비(운전직 인건비, 연료비, 타이어비), 보유비(정비직 인건비, 사무관리직 인건비, 임원 인건비, 차량보험료, 차량 감가상각비, 기타 차량유지비, 차고지비, 기타관리비, 정비비, 적정이윤) 등 13개 항목

※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의 차고지비 항목 내용

연 도	차고지비
2004	○ 보유차량에 대하여 1년에 m^2 당 개별공시지가의 2.5% ○ 해당 적용 토지면적 : 대형($36m^2$), 중형($23m^2$)
'05~'06	○ 보유차량에 대하여 회사별 등급에 따라 1,000원 ~ 7,000원(대형기준)까지 차등지급(중형은 대형의 70% 적용)
'07~'08	○ 보유차량에 대하여 회사별 표준가액에 따라 차등지급(중형은 대형의 70% 적용)
'09~'11	○ 보유차량에 대하여 회사별 표준가액에 따라 차등지급(중형은 대형의 70% 적용) ○ 공영차고지 : 해당 $60m^2$ 적용, 자가 및 기타임대차고지 : 해당 $40m^2$ 적용
2012	○ 보유차량에 대하여 회사별 표준가액에 따라 차등지급 ▶ 공영차고지 : 원가보전율(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 면적 부과금액×70%) 적용 ▶ 자가 및 기타 임차차고지 : 해당 $40m^2$ 적용(중형은 대형의 70% 적용)
2013	○ 보유차량에 대하여 회사별 표준가액에 따라 차등지급 ▶ 공영차고지 : 원가보전율(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 면적 부과금액×80%) 적용 ▶ 자가 및 기타 임차차고지 : 해당 $40m^2$ 적용(중형은 대형의 70% 적용)
2014	○ 보유차량에 대하여 회사별 표준가액에 따라 차등지급 ▶ 공영차고지 : 원가보전율(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 면적 부과금액×90%) 적용 ▶ 자가 및 기타 임차차고지 : 해당 $40m^2$ 적용(중형은 대형의 70% 적용)
'15~'16	○ 보유차량에 대하여 회사별 표준가액에 따라 지급 ▶ 공영차고지 : 원가보전율(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 면적 부과금액×100%) 적용 ▶ 자가 및 기타 임차차고지 : 공시지가×25/1000×대당 $40m^2$ 적용(중형은 대형의 70% 적용)

○ 다만, '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' 총 13개 항목 중 차고지비의 '자가차고지 등' 항목만을 별도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다른 항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함

○ 한편 동 조례 개정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임차하는 차고지의 임차비용이 서울시가 지급하는 표준운송원가 보다 적게 발생할 수 있으며,

차고지비의 또 다른 항목인 '공영차고지'의 경우 공영차고지 입주업체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「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5조2)에 따라 “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”을 납부

2) 제5조(사용료)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설치업체(이하 "입주업체"라 한다)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1.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 재산평

하고, 서울시가 동 비용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국고로 납부되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임